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방식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폴리에틸렌 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벽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방식기술로서 마스타 고정구를 12% 이상의 표면함수율 즉, 습윤환경(습윤바탕면)에서도 견고한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방수방식 접착제인 마스타 접착제를 활용해 접착함에 따라 고정구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로 발생하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앵커 설치부를 통한 지하수의 유입 및 유입수의 수압작용을 방지하여 시트의 들뜸 및 박리현상을 해결함은 물론, 상수도 구조물 내부 음용수 공급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할 수 있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서 및 마스타 고정구 개발을 통해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방수·방식 공법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 및 그에 따른 내구성 저하문제와 방수·방식층의 하자 발생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방수·방식 안정성능의 확보가 가능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폴리에틸렌 수지계(Polyethylene)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내부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방식기술로써 12% 이상의 표면함수 상태에서도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마스타 접착제를 활용해 마스타 고정구를 접착하여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서 및 마스타 고정구의 개발을 통해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하여 이로 인한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파일웍스(백규호) ②(주)대우건설(김형) ③(주)포스코건설(한성희) ④한신공영(주)(태기전) ⑤(주)다산건설턴트(이해경)

나. 전화번호 : ①02-402-1515 ②02-2288-3114 ③054-223-6114 ④02-3394-3114 ⑤02-2222-4005

2. 명칭 : 선형응력이 도입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공법(PCFT 복합말뚝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얇은 두께의 강관 내부에 고속원심성형 방식으로 PHC말뚝을 합성시킨 PCFT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공법

<범위>

두께가 5~6mm인 강관 내부에 선형응력이 도입된 PC강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후 고속원심성형을 통해 생산된 중공형 콘크리트 충전 강관말뚝을 상부말뚝으로 하고 PHC말뚝을 하부말뚝으로 하는 복합말뚝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15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자동차로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번호변경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타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가족 간의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견인차의 최대적재량의 정확한 의미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여 과적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